

1.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

| 업 체 명 | 허 가 번 호 | 대 표 자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국제약품공업(주) | 제82호 | 김 사 용 |
| 소 재 지 | 경기 안산시 초지동 648 | |

- 라. 설립장소 : 추진위에서 별도 상정
- 마. 설립예산 : 전체 회원사에서 300만원씩 일괄 각출
- 바. 추진위 구성 : 총 5인
 - 1) 위원장 : 상근부회장
 - 2) 위 원 : 사민남(파학사료)
류시형(삼우화학)
김병기(한국바이엘)
장병표(삼화동물)

2. 대표자 변경

| 업 체 명 | 허 가 사 항 | 변경전 | 변경후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한국화이자(주) | 제조업·수입자확인 | 이 창 우 | 김 인 준 |
| (주)한국고킹 | 제조업·수입자확인 | 이 수 익 | 심 해 섭 |
| (주)럭키 | 제 조 업 | 최 근 선 | 성 재 갑 |
| 세교통상(주) | 수 입 자 확 인 | 양 승 갑 | 이 봉 환 |

4. 검사소 설립 추진위원회의

임시 이사회의 추진위구성 결의에 따라 검사소 설립 기본방향 등을 협의코자 3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추진위원들의 협의회가 개최되었다.

3. 임시 이사회 개최

- 협회 임시 이사회가 3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제1호 안건인 동물약품 검사소 설립계획(안)이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다.
- 가. 명 칭 : 동물약품 검사소
- 나. 발족시기 : 94년 8월 1일
- 다. 업무개시 : 94년 1월 1일

5. 통합공고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

상공자원부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개정에 따른 우리 협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.

| 현 행 | 개 정(안) | 의 건 사 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2조(취급지등) ① 동물용의약품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 및 구비요건은 제12조에 의한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【별첨】 | 제22조(취급지등) 동물용의약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 및 구비요건은 제12조에 의한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【별첨】 | 자구수정 |
| 제23조(원제동물의약품 수입절차) ① 원제동물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(생략) | 제23조(원제동물의약품 수입절차) ① 원제동물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(생략) | 원제동물용의약품의 협회 추천에 따른 자구수정 |
| ②~⑤(생략) | ②~⑤(생략) | 수입품목허가에 따른 제조 및 판매증명서의 간소화 |
| ⑥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에는 제조회사명, 제품명, 원료성분 및 분량, 색상, 효능과 효과, 용법과 용량, 포장단위, 유효기간, 주의사항,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일자, 생산국 법규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고 자국내에서 판매 및 수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. | ⑥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에는 품목허가번호, 허가일자, 제조회사명, 제품명, 원료성분 및 분량과 생산국 법규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고 자국내에서 판매 및 수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. | 수입되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|
| ⑦ ⑧ [신설] | ⑦ ⑧ 수입승인신청서에는 제품명, 제조회사명 및 포장단위를 기재하여야 한다. | |
| 제25조(동물의약품 원료의 수입절차) ①~② 생략 ③ 신설 | 제25조(동물의약품 원료의 수입절차) ①~② 생략 ③ 수입승인 신청서에는 일반명(일반명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명), 원료규격, 제조회사명 및 포장단위를 기재하여야 한다. | 원료의 규격 등을 명시하여 동물용의약품 이외의 것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|

6. 동물용 백신의 수급현황 전산코드 도입

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백신 수급현황의 효율적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품의 축종, 형태 및 질병코드를 도입키위하여 다음 기준을 마련하여 수급현황을 조사하고 있다.

- 나. 백신코드 : 백신형태코드 + 질병코드를 의미함
- 1) 백신형태코드 : 형태1 + 형태2 + 면역보강제 순으로 명기

백신 수급현황 프로그램 보안을 위한 백신명 코드화 기준

1. 각 백신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하여 코드화 한다.

가. 축종코드 : 백신 대상 축종명을 의미함.

| 축 종 명 | 축 종 코 드 명 |
|-------|-----------|
| 소 | 01 |
| 돼 | 04 |
| 닭 | 26 |
| 개 | 10 |
| 말 | 06 |
| 밍 | 16 |
| 토 | 11 |
| 고 | 12 |
| 기 | 39 |

| 형 태 1 | 형 태 2 | 면역보강제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○ 단미 → S | ○ 생독(생균) → L | ○ GEL → G |
| ○ 혼합 → M | ○ 사독(사균) → K | ○ OIL → O |
| ○ 복합 → W | ○ 생독(생균)+사독(사균) → LK | ○ LPGG → P |
| | ○ SUBUNIT → T | ○ QUIL-A → Q |
| | ○ 재조합 → R | ○ 기타 → X |
| | ○ 기 타 → Z | |

- * 단미 : 1종 생독 또는 생균 백신
- ** 혼합 : 2종 이상 바이러스 또는 세균 혼합 백신
- *** 복합 : 바이러스+세균 혼합 백신
- **** 생독(생균)+사독(사균) : LIVE(바이러스 또는 세균)+KILLED(바이러스 또는 세균)
- 2) 질병코드 : 영문 약자로 명기(별표 참조)
- 다. 상품명 : 회사고유의 상품명(한글, 영문 관계없음)을 기록